

아라싸인이 제공하는

비대면 바우처 수요 기업

빠르게 신청하기

- 사업목적 : 화상회의,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·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
- 모집대상 : 중소기업
- 모집규모 : 80,000개사 내외
- 모집방식 : 상시모집 (예산소진 시 까지)

□ 지원내용 : 비대면 서비스 도입·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 (자부담 10% 포함) 이내 바우처* 지급

* 바우처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

□ 지원방식 : 바우처 방식

◦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 후, 결제·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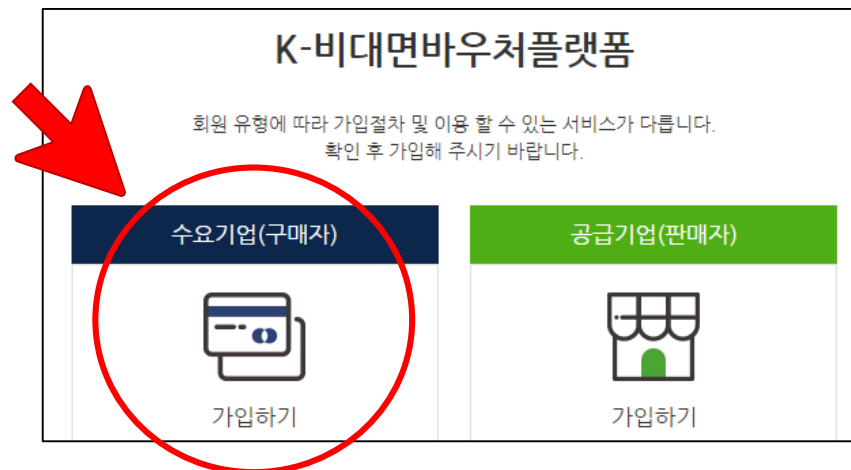
* 지원 중 휴·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,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

□ 지원조건 :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% (기업당 최대 360만원)까지 지원하며, 나머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

□ 서비스 제공 분야 : 화상회의, 재택근무, 클라우드, 보안 솔루션,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
비대면 서비스

① 비대면바우처플랫폼에 접속

<https://k-voucher.kr/>에 접속 → [수요기업 회원가입] 선택 → 수요기업(구매자) 가입하기



② 약관동의 및 휴대폰 실명확인

약관동의

이용약관

1. 목적

이 약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-비대면바우처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, K-비대면바우처플랫폼과 이용자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2. 약관의 효력 및 변경

☒ 약관에 동의함

실명확인

개정 정보통신법 제23조에 따라 회원 가입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

휴대폰 본인 인증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☒ 본인인증

※ 바우처 신청자(결제자)의 핸드폰번호로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③ [수요기업 회원가입] 정보입력 → 회원가입(심사접수)

로그인 정보(바우처 이용자정보)- 수요기업의 바우처결제자 정보를 기입 해주세요.

* 필수입력사항

아이디 *

중복확인

(영문 소문자, 숫자로 8~15자 이내 입력).

기업 정보

* 필수입력사항

수요기업명(한글) *

제출서류

* 필수입력사항

사업자등록증 *

파일선택(BMP,GIF,JEPG,PNG,PDF)

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체가능)

※ 필수서류 : ①사업자등록증, ②중소기업확인서, ③국세완납증명서, ④지방세완납증명서

담당자- 공급기업에 정보가 표기 및 제공됩니다.

☐ 대표연락처와 동일

담당자 성명 *

비대면 바우처 지급 선택 및 운영기관 선택

☒ 신한바우처카드(개인/법인카드) ☐ 제로페이(zeropay 상품권)

※ 운영기관 : ①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(042-867-9694), ②벤처기업협회(02-6331-7083), ③이노비즈협회(031-628-9631), ④메인비즈협회(02-2230-2152) 중 택일

회원가입(심사접수)

운영기관 심사기간 필요



수요기업 선정 심사 결과: **심사확정**

심사가 확정되면 아래와 같이 바우처지원기간과 예산한도가 표기 됩니다.

수요기업 바우처 지원기간	2020-10-14~2021-06-14
바우처 예산 한도	4,000,000원(자부담금 10 % 포함)



심사기간이 길어지면 회원가입(심사접수)시 선택한 운영기관에 전화상담을 하는 것도 방법



창업진흥원 예산반영후 “재택근무(협업Tool)”에서 “아라싸인”을 검색하여 [아라바우처신청]과 [서비스요청]을 하세요!

아라바우처10 정상가격 770,000원	아라바우처20 정상가격 1,430,000원	아라바우처40 정상가격 2,640,000원
아라싸인지원금 27만원	아라싸인지원금 43만원	아라싸인지원금 64만원
정부바우처지원금 45만원	정부바우처지원금 90만원	정부바우처지원금 180만원
본인부담금 5만원	본인부담금 10만원	본인부담금 20만원

필수 제출서류 발급기관

- 1) 사업자등록증명 → 국세청 홈택스 (<https://hometax.go.kr>)
- 2) 국세완납증명서 → 국세청 홈택스 (<https://hometax.go.kr>)
- 3) 지방세납세증명서 → 정부24 (<https://gov.kr>)

신 청 자 격

중소기업확인서는
10월 13일부터
필수제출서류에서
제외되었습니다.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

중소기업의 범위 → 소상공인, 소기업, 중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등

- [주요업종별 중소기업의 규모]
- ① 의복등 제조업 ~ 가구제조업 : 평균매출액 1,500억원 이하
 - ② 농업.임업.어업 ~ 도매및소매업 : 평균매출액 1,000억원 이하
 - ③ 음료제조업 ~ 정보통신업 :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
 - ④ 기계장비수리업 ~ 기타개인서비스업 :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
 - ⑤ 숙박및음식점업 ~ 교육서비스업 :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